

##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544호(2011.10.05)로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된 「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」 내 보상완료된 지장물건 중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8수용0358호(2018.11.8.)로 수용재결 결정된 지장물이 2019.1.2. 일자로 수용개시 되었으나 동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동법 제89조에 의거 “행정대집행법”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자 하나, 설치자 또는 소유자 미상으로 인하여 행정대집행 실행을 위한 계고장 및 대집행 영장 송달이 불가하여 “행정대집행법 시행령” 제5조에 의거 붙임의 계고장 및 대집행 영장을 공시송달하오니, 붙임 지장물의 설치자 및 소유자는 2019.9.19.까지 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. 만일 위 기간 내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“행정대집행법”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2019.9.19. 이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처분내용 :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행정대집행 실시 통보
2. 처분근거: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,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
3. 처분대상 및 그 주소지 : “별첨(공시송달공고목록)” 참조
4. 의무자의 주소, 성명: “별첨(공시송달공고목록)” 참조
5. 공시송달내역 : “별첨(계고장, 영장, 공시송달공고목록)” 참조
6. 사업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
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7. 공고기간 : 게시일로부터 14일간(2019.9.5. ~ 2019.9.19.)

8. 공고 장소 : 경기도 과천시청 게시판

9. 문의처

-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: 031-425-0652, 0639

2019년 9월 일

##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

위 법률상 대리인 경기지역본부장



# 행정대집행영장

주소 및 성명 : 붙임 공시송달공고목록 참조

귀하가 소유(점유)하고 있는 「과천시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」 내 지장물 (붙임 공시송달공고목록 참조)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8수용0358호(2018.11.8.)로 수용재결 결정되어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43조에 따라 수용개시일(2019.1.2.)까지 자진 이전하여야 하나, 지정기일 내에 스스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이전이 어려우므로 다음 근거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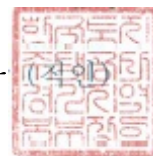
- 근거 :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,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1항,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행정대집행 일자               | 2019.9.5. ~ 2019.9.19. |
| 행정대집행 집행책임자            |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사업단장 김정기    |
|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 견적액 | 추후 산정                  |

2019. 9.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

위 법률상 대리인 경기지역본부장



# 계 고 장

주소 및 성명 : 붙임 공시송달 공고목록 참조

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「과천시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」 내 편입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에 소재한 소유자미상의 지상물건(붙임 공시 송달공고 목록)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8수용0358호(2018.11.8.)로 수용재결 결정되어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43조에 따라 수용개시일(2019.1.2.)까지 자진 이전하여야 하나, 지정기일 내에 스스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이전이 어려우므로 이를 방치함은 공익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득이 본 계고서를 송달하오니, **2012년 9월 19일 이전까지 자진이전(철거)하시기 바랍니다.**

**만약 계고기한 내에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스스로 이를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토록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.**

이상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89조 (대집행) 및 『한국토지주택공사법』 제19조,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1항3호 (대집행의 위탁)과 『행정대집행법』 제2조(대집행과 그 비용징수) 및 같은법 제3조(대집행의 절차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하는 바입니다.

2019. 9.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위 법률상 대리인 경기지역본부장

